
2017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매뉴얼

2017. 1.

경 기 도

세부 사업별 기준정보 변경

- 적용시점 : 2017. 1. 13.(금)
- 대 상 : 적용시점 이후 신규 이용자
- 변경내용

사업명	항목	기준	변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0101)	연령	만18세 이하 장애 아동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요구 기준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추가>(단, 6세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제공 인력	장애인활동보조, 영양보호사, 기기리폼 관련 자격자, 재활공학전문가	○장애인활동보조, 영양보호사, 기기리폼 관련 자격자, 재활공학전문가 <추가>○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기간	12개월(재판정 4회)	12개월(재판정 4회) <추가>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제공 절차	①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요구조사 ②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①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②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추가>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사업명	항목	기준	변경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100209)	유형	기관방문 필수, 서비스 제공 시 재가방문 허용	기관방문 필수, 서비스 제공 시 재가방문 허용 (단, 재가방문의 경우 제공기관별 총 이용 대상자의 30% 이내로 제한함)
	제공 인력	문화여가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2개월 이상인자 ②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문화여가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삭제>실무경력 12개월 이상인자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삭제>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삭제>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 (180109)	대상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1가구 2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중 만 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1가구 2인 이상)
	집단 규모	1가구(2인 이상)	1가구(2인 이상) 필요 시 1:1 개별 상담 허용 (단,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0909)	가격	월 152천원 (정부지원 136,800원/ 본인부담 15,200원)	(월4회) 월 160천원 (정부지원 14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031109)	대상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이거나 그 외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 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있 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 이 추천하는 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이며 그 외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 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있 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 이 추천하는 경우
	결제 횟수	-	1일 2회 정상결제 허용 (클래식 이론 및 실기 1회, 정서순화프로그램 1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AB (050509, 050609)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140%이하	기준중위소득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유아동 신체정서 통합서비스 (220609)	대상	만 5세 ~ 만 12세	만 3세 ~ 만 9세
	제공 인력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신체영역>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사업명	항목	기존	변경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정서영역>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예술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음악, 미술 관련 전공자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2년 이상 인자	음악, 미술, 예술 관련 전공자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2년 이상 인자
	회수	주1회 월4회, 회당 120분	주1회 월4회(신체 2회+정서 2회), 회당 120분
	내용	-신체적 측면 : 체성분 및 비만 진단 성장 발육 평가 후 맞춤형 영양, 운동처방, 체력강화 프로그램, 수영, 감각통합 운동 -정서적 측면 : 자아존중감 정도 측정, 심리상담 후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클래식 음악 (플루트, 바이올린 등) 연주 -예술 체험을 위한 야외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가서비스 : 신체체질검사, 심리검사	- 신체분야 : 체성분 및 비만 진단 성장 발육 평가 후 맞춤형 영양, 운동처방, 수영< 삭제 > 감각통합 운동 등 체력강화 프로그램 - 정서분야 : 자아존중감 정도 측정, 심리상담 후 자기존중감 향상 위한 음악< 추가 > 미술, 연극 활동 프로그램 -< 삭제 > 예술 체험을 위한 야외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삭제 > 부가서비스 : 신체체질검사, 심리검사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 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 삭제 >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 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
아동예술 멘토링 지원서비스 (290309)	제공인력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미술 또는 미술치료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미술치료 또는 (통합) 미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심리발달검사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심리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심리발달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심리발달검사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미술 또는 미술치료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미술치료 또는 (통합) 미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심리발달검사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심리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심리발달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심리발달검사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사업명	항목	기준	변경
	회수	분기 첫 번째 달-월8회(주2회) 분기 두, 세번째 달-월6회(주2회)	-예술멘토링 : 월 6회(주2회) 회당 90분 -공예 및 예술체험학습 : 월 1회 회당 180분
	내용	심리 발달 위험군 아동 조기 발견, 학습 잠재력 검사를 통한 효과적 학습 능력 향상 유도	<삭제>심리 발달 위험군 아동 조기 발견, 학습 잠재력 검사를 통한 효 과적 학습 능력 향상 유도
	내용	융복합 통섭 교육으로서 미술과 타 교과인 수학, 자연과학, 의과학, 생명 공학, 인문학 등 타 장르와의 협업 및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연 2회) - 서비스 제공방식 : 각 분야의 전문 가 초빙, 작업장 방문 등으로 참여 학생들과의 1:1 멘토링 실시 및, 미 술과 각 분야가 융합된 프로그램의 구성, 실현으로 적극적인 예술 활동 과 진로 탐색의 두 가지 기회제공	<삭제>융복합 통섭 교육으로서 미술 과 타 교과인 수학, 자연과학, 의과 학, 생명공학, 인문학 등 타 장르와 의 협업 및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연 2회) - 서비스 제공방식 : 각 분야의 전문 가 초빙, 작업장 방문 등으로 참여 학생들과의 1:1 멘토링 실시 및, 미 술과 각 분야가 융합된 프로그램의 구성, 실현으로 적극적인 예술 활동 과 진로 탐색의 두 가지 기회제공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 표준매뉴얼

유형1-1)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A(0101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전체) ※ 단, 성남, 고양은 '가격자율화사업' 추진으로 '시·군공동개발형'으로 사업 추진															
목적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문제행동을 감소,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중 아래 욕구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욕구(서비스 적합)기준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 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 *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복지부 지침 248~265쪽 참고)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추천시 소속기관의 아동이나 직접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해서 추천 가능 ▷ 우선순위 : ①문제행동의 수준, ②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 중복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호"에 의거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에 충족되는 인력 ①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 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 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격/기간	▷ 월16만원 <table><tr><th>구 분</th><th>1등급(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th><th>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h><th>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th></tr><tr><td>정부지원</td><td>144,000원(90%)</td><td>128,000원(80%)</td><td>112,000원(70%)</td></tr><tr><td>본인부담</td><td>16,000원(10%)</td><td>32,000원(20%)</td><td>48,000원(30%)</td></tr></table>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 1회 (최대2년)				구 분	1등급(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구 분	1등급(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유형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070101)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21개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의왕,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서비스제공범위 : 전국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으며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제공 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장애인활동보조, 영양보호사, 기기 리폼 관련 자격자, 재활공학전문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격/기간	▷ 가격 : 12만원 <table><tr><th>구 분</th><th>1등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th><th>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 ~ 140%이하)</th><th>3등급 (기준중위소득140%초과)</th></tr><tr><td>정부지원</td><td>108,000원</td><td>96,000원</td><td>84,000원</td></tr><tr><td>본인부담</td><td>12,000원</td><td>24,000원</td><td>36,000원</td></tr></table>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 4회(최대5년)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구 분	1등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 ~ 140%이하)	3등급 (기준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	12,000원	24,000원	36,000원
구 분	1등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 ~ 140%이하)	3등급 (기준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	12,000원	24,000원	36,000원													
내용/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횟수</th></tr><tr><td>기본 서비스</td><td>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td><td>렌탈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td></tr></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②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3)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 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재가방문형 ▷ 결제시기 : 월별결제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제외 사업															

유형3-1]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A(1302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18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화성 시흥 광명 군포 김포 아산 안성 하남 고양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극복,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여 미래국민 주역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15세 이하 아동 (우선순위: 한부모가정) ※ 기존 아동·청소년바른성장통합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으로 인해 신청불가											
제공 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에 의거 ‘아동비전형성사업’에 충족되는 인력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정서힐링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행동, 놀이심리, 여가상담, 레크리에이션 재활 자격증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지도경력 1년 이상인자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중등정교사 ④ 여가학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여가상담·여가교육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가격/ 기간	▷ 월14만원 <table><tr><td>구 분</td><td>1등급(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td><td>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d></tr><tr><td>정부지원</td><td>126,000원(90%)</td><td>112,000원(80%)</td></tr><tr><td>본인부담</td><td>14,000원(10%)</td><td>28,000원(20%)</td></tr></table> ▷ 지원기간 : 12개월			구 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	14,000원(10%)	28,000원(20%)
구 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	14,000원(10%)	28,000원(20%)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②‘현장체험통합형’, ③‘신체활동통합형’ ④‘정서힐링통합형’은 ①‘비전형성기본유형’의 내용 중 2분야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table><tr><td>구분</td><td>서비스 내용 및 횟수</td></tr><tr><td rowspan="5">기본 서비스 <개별+집단 가능></td><td>- 아래 ①, ②, ③, ④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td></tr><tr><td>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태도, 생활습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 서비스 횟수 : 월 4회 제공, 회당 120분(집단규모 1:1~1:6인) / 회당 180분(집단규모 1:7~1:12인)</td></tr><tr><td>② 현장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현장체험 혼합하여 월 4회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회 , 회당 120분 (집단규모에 대한 횟수는 '①유형'과 동일 적용) - 현장체험 : 월2회, 회당 240분 (집단규모 12인 이하) 단, 월1회/ 회당 480분씩 허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td></tr><tr><td>③ 신체활동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생활지도, 영양상담 및 교육, 운동교육 등 실시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신체활동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월 2회 + 신체활동 월 2회 / 집단규모 : 1:1~10인</td></tr><tr><td>④ 정서힐링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분노조절·용서·자기격려·여가힐링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정서힐링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6개월 + 정서힐링 6개월로 혼합(연간 계획)하여 진행/ 집단규모 : 1:1~10인</td></tr><tr><td>부가 서비스</td><td>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개별+집단 가능>	- 아래 ①, ②, ③, ④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태도, 생활습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 서비스 횟수 : 월 4회 제공, 회당 120분(집단규모 1:1~1:6인) / 회당 180분(집단규모 1:7~1:12인)	② 현장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현장체험 혼합하여 월 4회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회 , 회당 120분 (집단규모에 대한 횟수는 '①유형'과 동일 적용) - 현장체험 : 월2회, 회당 240분 (집단규모 12인 이하) 단, 월1회/ 회당 480분씩 허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③ 신체활동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생활지도, 영양상담 및 교육, 운동교육 등 실시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신체활동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월 2회 + 신체활동 월 2회 / 집단규모 : 1:1~10인	④ 정서힐링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분노조절·용서·자기격려·여가힐링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정서힐링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6개월 + 정서힐링 6개월로 혼합(연간 계획)하여 진행/ 집단규모 : 1:1~10인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개별+집단 가능>	- 아래 ①, ②, ③, ④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리더십 : 자기특성이해, 대인관계, 협동, 문제해결, 집단 과업 수행 방법 포함 - 진로탐색 : 자기진로적성 파악, 직업관형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포함 - 자기주도 학습 :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설정, 학습환경 조성, 학습태도, 생활습관, 시간관리, 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 사회성 향상: 자기이해, 대인관계, 갈등해결 기술, 상황 적응능력, 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 서비스 횟수 : 월 4회 제공, 회당 120분(집단규모 1:1~1:6인) / 회당 180분(집단규모 1:7~1:12인)																																									
	② 현장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현장체험 혼합하여 월 4회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 월2회 , 회당 120분 (집단규모에 대한 횟수는 '①유형'과 동일 적용) - 현장체험 : 월2회, 회당 240분 (집단규모 12인 이하) 단, 월1회/ 회당 480분씩 허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적으로 진행 가능																																									
	③ 신체활동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생활지도, 영양상담 및 교육, 운동교육 등 실시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신체활동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월 2회 + 신체활동 월 2회 / 집단규모 : 1:1~10인																																									
	④ 정서힐링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유형 중 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 분노조절·용서·자기격려·여가힐링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횟수 : 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정서힐링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120분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 6개월 + 정서힐링 6개월로 혼합(연간 계획)하여 진행/ 집단규모 : 1:1~10인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단, 서비스 제공시에는 집단활동도 허용)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3">등급</th><th rowspan="3">본인 부담금</th><th colspan="7">정부지원금</th></tr><tr><th colspan="4">비전형성기본 월 4회</th><th colspan="3">기본유형(2회)+체험(1회)</th></tr><tr><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1회</th><th>2회</th><th>3회</th></tr><tr><td>1</td><td>14</td><td>31.5</td><td>31.5</td><td>31.5</td><td>31.5</td><td>42</td><td>42</td><td>42</td></tr><tr><td>2</td><td>28</td><td>28</td><td>28</td><td>28</td><td>28</td><td>37</td><td>37</td><td>38</td></tr></table>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비전형성기본 월 4회				기본유형(2회)+체험(1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1	14	31.5	31.5	31.5	31.5	42	42	42	2	28	28	28	28	28	37	37	38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비전형성기본 월 4회				기본유형(2회)+체험(1회)																																		
		1회	2회	3회	4회	1회	2회	3회																																		
1	14	31.5	31.5	31.5	31.5	42	42	42																																		
2	28	28	28	28	28	37	37	38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형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0901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8개 시·군(부천, 시흥, 고양, 구리, 하남, 이천, 여주, 용인)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단 장애인 140%이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로 만19세 이상/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에 의거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서비스’에 충족되는 인력 ☞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 지도 점검 및 교육				
가격/기간	▷ 월20만원(정부지원 180,000원/ 본인부담 20,000원) ▷ 지원기간:12개월 ▷ 재판정:4회(최대5년)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횟수
	기본 서비스 <1:1원칙>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 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주1회 월4회 (회당60분)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②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③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단, 서비스 제공시 재가방문 허용)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0	1회 45	2회 45	3회 45	4회 45

유형6]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2802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13개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시흥, 화성, 오산, 고양, 의정부, 의왕, 파주)					
목적	▷ 장애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형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4세~70세 이하 등록 장애인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에 의거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인력 적용)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초등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추가인력기준 : ☞ 초·중등교육 2급 정소자 자격증 소지자(체육교육)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특수체육관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운동지도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장애인 맞춤 운동 관련 교과목 및 실습시간 총 40시간 이상 이수 한 자 (*표 참조)					
	[표]인정과목					
	구 분	인 정 과 목				
	관련 교과목	▶ 특수체육개론, 운동(체육,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재활, 운동역학(보행운동), 해부학, 스포츠(체육)심리학, 스포츠의학, 장애(분류)의 이해, 운동처방론, 운동능력검사, (장애인)체력트레이닝				
	실기실습 교과목	▶ 임상실습, 특수체육현장실습, 수영(수중재활운동), 체조(에어로빅, 리듬운동), 배드민턴, 육상, 스키, 휠체어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재활마사지, 재활운동, 배구(좌식배구), 요가(스트레칭), 골프, 농구				
가격/기간	▷ 월20만원					
	구 분	1등급 (수급자)	2등급(차상위 ~ 기준중위소득50% 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 ~ 120 %이하)	4등급(기준중위 소득120%초과 ~ 140%이하)	5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 170 %이하)
	정부지원	180,000원	170,000원	160,000원	15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 1회 (최대2년)					

내용/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 분	내 용	횟 수
기본 서비스	1. 사전체력검사: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2.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3.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4. 분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5. 사후검사: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개별(1:1): 주2회/월8회 (회당60분) -집단(1:2~3인) : 주2회/ 월8회 (회당60분) -집단(1:4~5인) : 주3회/ 월12회(회당60분) *주2회 이상 서비스는 요일을 달리하여 제공
부가 서비스	1. 특별활동: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승마체험 등 반기별 1회 실시 2. 그 밖에 신체 스포츠 활동(수영 등)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3개월 단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시 축적된 건강 체력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3) 서비스 장소 (혼합)

①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②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③ 대상자 자택 또는 대상자 희망 장소 협조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단, 서비스 제공시에는 재가+집단도 허용)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원)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개별(1:1) 월 8회	집단(1:2 ~ 3인) 월 8회	집단(1:4 ~ 5인) 월 12회	
				1~11회	12회
1	20	22,500	22,500	15,000	15,000
2	30	21,250	21,250	14,160	14,240
3	40	20,000	20,000	13,330	13,370
4	50	18,750	18,750	12,500	12,500
5	60	17,500	17,500	11,660	11,740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형7) 통합가족 상담 서비스(1801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11개 시·군 (성남, 부천, 용인, 평택, 시흥, 수원, 광명, 군포, 하남, 이천, 화성)					
목적	▷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1가구 2인 이상) -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기타 부모 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신청 : 서비스를 제공 받을 가족의 대표가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으로 신청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가족상담 필수 교과목인 가족 상담 관련 과목, 상담이론관련과목, 인간 발달 관련한 3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선택과목으로서 가족 관련 과목, 정신건강, 상담실습, 가족평가, 상담윤리의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한 자 ②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자격 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액/기간	▷ 월16만원(본인부담금 50%까지 차등부과)					
	구 분	1등급 (수급자)	2등급(차상위~기준 중위소득50%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50% 초과~120%이하)	4등급(기준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	5등급(기준중위소득140% 초과~17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96,000원	80,000원
	본인부담	16,000원	32,000원	48,000원	64,000원	80,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가족상태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사정 :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척도, 부부의 개인 및 관계 척도 등을 통한 가족 관계 사정 및 문제 평가 2. 목표 설정 :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후 가족과 합의된 상담 목표 설정 3. 가족상담 개입 : 가족의 의사소통 사정 및 개입,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향상, 가족의 정서 확인과 표현, 가족 위기사정 및 개입, 이야기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 확립, 가족조각을 통한 가족 의사소통 방식 이해,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상담 개입 등				주1회, 월4회 (회당 50분)
	부가서비스	1. 종합심리평가 2. 개별 면담 및 상담 치료				

	2) 집단규모 : 1가구 2인 이상 ※ 필요시 1:1 개별상담 허용 (단,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 3)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검사와 상담을 통한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및 상담 목표 설정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1	16	36	36	36	36
	2	32	32	32	32	32
	3	48	28	28	28	28
	4	64	24	24	24	24
	5	80	20	20	20	20

유형9)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9912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4개 시·군 (광주, 김포, 안산, 시흥)					
목적	▷ 가족관계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가정으로의 재정립을 위한 전문예술가, 예술치료사, 상담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족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제공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 7세~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위기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가정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및 가정 포함), 부모교육 및 가족 간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중복수혜불가 ▷ 신청 : 서비스를 제공 받을 가족의 대표가 신청 ▷ 기관연계 : 무한돌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유치원,학교 등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 신청					
제공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서비스내용별 적합한 인력 - 예술치료사(미술) 전공관련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경력 100시간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단, 사회복지사는 전체 제공인력의 1/3을 넘을 수 없음 - 상담전문가 : 상담심리·가족관련학 전공자로서 학사는 상담실무 2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상담실무 1년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자격 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격/기간	▷ 월 20만원					
	구 분	1등급 (수급자)	2등급(차상위~기준 중위소득50%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50% 초과~120%이하)	4등급(기준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	5등급(기준중위소득140% 초과~170%이하)
	정부지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본인부담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① 상담 및 사례관리 : 가족집단 및 가구원 개별상담 - 가족구성원 상담 및 집단상담 : 프로그램설계 및 가족구성원 갈등 파악 및 맞춤형 관리계획 - 사례관리 :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구성원 갈등 해소 및 면역력배양)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별 임상사례 관리 진행				분기별 1회
		② 정서지원서비스 : 예술치료프로그램 및 그룹 예술 활동 - 가족구성원 간 예술치료프로그램 및 그룹 예술 활동을 통한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 전문치료기법을 통한 가족의 이해 - 전문예술인과 함께 공동 과제를 진행하여 가족공동의 예술적경험과 성취감 고취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③ 성과관리 - 가족작품전시회 :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중 완성된 작품을 엄선하여 전시회를 준비하며 가족 공동의 목표와 성취감 획득 - 가족회복임상사례집 제작 : (가족공동성과물) 사전사후검사 / 상담사례 / 프로그램 내용 등을 모두 담아내어 제작				각 각 연 1회
④ 미술전시회 관람				연 1회		

	▷ 집단규모 : 1가구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변화를 체크 ⑤ 5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rowspan="2">본인부담금</th><th colspan="4">정부지원금</th></tr><tr><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r><tr><td>1</td><td>20</td><td>45</td><td>45</td><td>45</td><td>45</td></tr><tr><td>2</td><td>40</td><td>40</td><td>40</td><td>40</td><td>40</td></tr><tr><td>3</td><td>60</td><td>35</td><td>35</td><td>35</td><td>35</td></tr><tr><td>4</td><td>80</td><td>30</td><td>30</td><td>30</td><td>30</td></tr><tr><td>5</td><td>100</td><td>25</td><td>25</td><td>25</td><td>25</td></tr></table>	등급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1	20	45	45	45	45	2	40	40	40	40	40	3	60	35	35	35	35	4	80	30	30	30	30	5	100	25	25	25	25
등급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1	20	45	45	45	45																																				
2	40	40	40	40	40																																				
3	60	35	35	35	35																																				
4	80	30	30	30	30																																				
5	100	25	25	25	25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형1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0809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28개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오산, 하남, 의왕, 양평, 고양,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과천, 여주, 이천, 가평, 남양주)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대상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아래의 욕구 및 연령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욕구 및 연령 기준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업무 수행 가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37”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충족되는 인력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충족 가능)				
가격/기간	▷ 월 160천 원(정부지원 14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 기간 : 10개월 ▷ 재판정1회(최대1년8개월)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구 분	내 용		횟 수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개 별(1:1)원 칩 주1회, 월4회 (회 당60분)	
	장애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체형교정 ·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체형교정 · 자극요법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기관 선택)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16	36	36	36	36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유형1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0311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20개 시·군 (성남,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여주, 용인)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예방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12세 이하 아동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에 의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충족되는 인력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가격/기간	▷ 월20만원 <table><tr><td>구 분</td><td>1등급(수급자, 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td><td>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d></tr><tr><td>정부지원금</td><td>180,000원(90%)</td><td>160,000원(80%)</td></tr><tr><td>본인부담금</td><td>20,000원(10%)</td><td>40,000원(20%)</td></tr></table>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1회(최대2년)			구 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 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기준중위소득50%이하)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내용/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table><tr><td>구분</td><td>서비스 내용</td><td>서비스횟수</td></tr><tr><td rowspan="8">기본 서비스</td><td>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td><td>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td></tr><tr><td>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td><td>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td></tr><tr><td>3. 일반 연주회 관람</td><td>반기별 1회</td></tr><tr><td>4. 향유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td>반기별 1회</td></tr><tr><td>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어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어 가능)</td><td>제공기간 중</td></tr><tr><td>6. 참여 아동 합주</td><td>월 1회 이상</td></tr><tr><td>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td><td>연 1건 이상</td></tr><tr><td>8. 사전·사후 진단 검사</td><td>연 2회</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유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어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어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어·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1회,월4회 (회당 60분) (50분교육,10분상담,기록 및 준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유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어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어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시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3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1일 2회 정상결제 허용(클래식 1회, 정서순화 1회)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h colspan="8">정부지원금</th></tr><tr><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h>6회</th><th>7회</th><th>8회</th></tr><tr><td>1</td><td>20</td><td>22.5</td><td>22.5</td><td>22.5</td><td>22.5</td><td>22.5</td><td>22.5</td><td>22.5</td><td>22.5</td></tr><tr><td>2</td><td>40</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r></table>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	20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	40	20	20	20	20	20	20	20	20
등급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	20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	40	20	20	20	20	20	20	20	20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형12,1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A(수중/050509),B(유산소/050609)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 A(수중운동): 3개 시·군(수원, 안산, 광명) ▷ B(유산소운동): 3개 시·군(시흥, 광주, 수원)														
목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제공 기관 및 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에 의거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에 충족되는 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중·정교사(이하 “초·중·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가격/기간	▷ A(수중운동): 월12만원 (정부지원 110,000원, 본인부담 10,000원) ▷ B(유산소운동): 월7만원 (정부지원 60,000원, 본인부담 10,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3회, 회당 90분) -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기동성, 심폐 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 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요일을 달리하여 주3회,월12회/ 회당90분 집단1:1~25인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등록유형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실시간(회당) 결제금액														
	(단위: 천원)														
	구분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A형	10	9	9	9	9	9	9	9	9	9	9	10	10	
	B형	10	5	5	5	5	5	5	5	5	5	5	5	5	

항 목	내 용
	▷ 의료급여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참고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1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2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3 중위소득 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57,000	35,790	10,050	36,531
2인	1,970,000	60,333	42,866	61,029
3인	2,549,000	78,149	76,822	79,107
4인	3,127,000	96,146	102,553	97,367
5인	3,706,000	114,231	128,221	115,615
6인	4,284,000	131,267	149,083	133,141
7인	4,863,000	149,419	168,053	151,539
8인	5,441,000	168,468	188,200	171,272
9인	6,020,000	186,406	206,834	189,872
10인	6,598,000	204,885	226,743	209,322

4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22,000	40,564	16,160	41,214
2인	2,252,000	69,115	59,938	70,038
3인	2,913,000	89,571	92,044	90,711
4인	3,574,000	110,177	122,696	111,556
5인	4,235,000	131,267	149,083	133,141
6인	4,896,000	151,539	170,481	153,278
7인	5,557,000	171,272	191,001	174,203
8인	6,219,000	193,438	214,178	197,177
9인	6,880,000	214,233	236,585	219,758
10인	7,541,000	232,910	254,377	240,800

5 중위소득 9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88,000	45,603	20,817	45,900
2인	2,533,000	78,149	76,822	79,107
3인	3,277,000	100,677	108,928	101,699
4인	4,021,000	124,348	141,317	126,004
5인	4,764,000	147,189	165,953	149,419
6인	5,508,000	171,272	191,001	174,203
7인	6,252,000	193,438	214,178	197,177
8인	6,996,000	214,233	236,585	219,758
9인	7,740,000	240,800	261,485	248,972
10인	8,484,000	269,208	288,090	281,298

6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인	6,120,000	189,872	210,385	193,438
7인	6,947,000	214,233	236,585	219,758
8인	7,773,000	240,800	261,485	248,972
9인	8,600,000	269,208	288,090	281,298
10인	9,426,000	295,815	312,864	312,298

7 중위소득 11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18,000	55,746	36,034	56,367
2인	3,096,000	94,981	101,035	96,146
3인	4,005,000	122,753	139,451	124,348
4인	4,914,000	151,539	170,481	153,278
5인	5,823,000	180,122	200,115	183,218
6인	6,732,000	209,322	231,505	214,233
7인	7,641,000	240,800	261,485	248,972
8인	8,551,000	269,208	288,090	281,298
9인	9,460,000	295,815	312,864	312,298
10인	10,369,000	337,035	349,667	364,337

8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84,000	61,029	43,944	61,200
2인	3,377,000	104,130	113,972	105,337
3인	4,369,000	135,080	153,035	137,073
4인	5,361,000	165,762	185,403	168,468
5인	6,353,000	197,177	218,155	200,907
6인	7,344,000	226,065	247,971	232,910
7인	8,336,000	258,317	278,115	269,208
8인	9,328,000	295,815	312,864	312,298
9인	10,320,000	337,035	349,667	364,337
10인	11,311,000	364,337	368,636	390,656

9 중위소득 13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49,000	65,945	53,935	66,712
2인	3,659,000	112,929	126,353	114,231
3인	4,733,000	145,018	163,570	147,189
4인	5,808,000	180,122	200,115	183,218
5인	6,882,000	214,233	236,585	219,758
6인	7,956,000	248,972	269,299	258,317
7인	9,031,000	281,298	299,471	295,815
8인	10,105,000	312,298	329,212	337,035
9인	11,180,000	364,337	368,636	390,656
10인	12,254,000	390,656	384,842	431,402

10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14,000	71,140	63,978	71,990
2인	3,940,000	121,620	137,459	122,753
3인	5,097,000	157,887	177,655	160,431
4인	6,254,000	193,438	214,178	197,177
5인	7,411,000	232,910	254,377	240,800
6인	8,568,000	269,208	288,090	281,298
7인	9,725,000	312,298	329,212	337,035
8인	10,883,000	337,035	349,667	364,337
9인	12,040,000	390,656	384,842	431,402
10인	13,197,000	431,402	405,835	498,529

11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79,000	76,490	73,165	76,509
2인	4,222,000	129,385	147,166	131,267
3인	5,461,000	168,468	188,200	171,272
4인	6,701,000	209,322	231,505	214,233
5인	7,941,000	248,972	269,299	258,317
6인	9,180,000	281,298	299,471	295,815
7인	10,420,000	337,035	349,667	364,337
8인	11,660,000	364,337	368,636	390,656
9인	12,900,000	431,402	405,835	498,529
10인	14,139,000	498,529	434,777	639,411

12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45,000	81,698	81,836	82,550
2인	4,503,000	138,870	157,172	140,943
3인	5,825,000	180,122	200,115	183,218
4인	7,148,000	219,758	242,063	226,065
5인	8,470,000	269,208	288,090	281,298
6인	9,792,000	312,298	329,212	337,035
7인	11,115,000	364,337	368,636	390,656
8인	12,437,000	390,656	384,842	431,402
9인	13,760,000	431,402	405,835	498,529
10인	15,082,000	498,529	434,777	639,411

13 중위소득 1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810,000	86,847	89,147	87,915
2인	4,785,000	147,189	165,953	149,419
3인	6,190,000	189,872	210,385	193,438
4인	7,595,000	232,910	254,377	240,800
5인	9,000,000	281,298	299,471	295,815
6인	10,405,000	337,035	349,667	364,337
7인	11,810,000	364,337	368,636	390,656
8인	13,215,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4,620,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024,000	498,529	434,777	639,411

14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50,737	10,733	2,000	14,868	1,300,000	39,780	14,987	39,930
485,882	14,868	2,317	16,668	1,300,000	39,780	14,987	39,930
544,706	16,668	2,520	18,708	1,304,901	39,930	16,111	40,564
611,362	18,708	2,598	20,795	1,325,635	40,564	16,160	41,214
679,562	20,795	2,858	22,306	1,346,853	41,214	16,355	41,405
728,942	22,306	3,468	24,200	1,353,121	41,405	16,830	41,976
790,857	24,200	3,590	24,851	1,371,751	41,976	17,745	42,547
812,111	24,851	3,855	26,638	1,390,437	42,547	18,489	42,840
870,512	26,638	4,674	27,563	1,400,000	42,840	18,490	43,034
900,766	27,563	5,477	28,675	1,400,000	42,840	18,490	43,034
937,075	28,675	6,284	30,079	1,406,329	43,034	18,490	43,714
982,975	30,079	6,790	30,600	1,428,549	43,714	18,603	44,329
1,000,000	30,600	7,839	30,872	1,448,674	44,329	19,061	44,898
1,000,000	30,600	7,839	30,872	1,467,245	44,898	20,093	45,603
1,008,884	30,872	7,887	32,053	1,490,304	45,603	20,817	45,900
1,047,491	32,053	7,974	33,259	1,500,000	45,900	22,752	45,931
1,086,887	33,259	8,552	33,660	1,500,000	45,900	22,752	45,931
1,100,001	33,660	9,294	34,034	1,500,000	45,900	22,752	45,931
1,112,212	34,034	9,660	35,167	1,501,024	45,931	23,249	46,456
1,149,242	35,167	10,050	35,790	1,518,176	46,456	24,206	47,076
1,169,623	35,790	10,050	36,531	1,538,416	47,076	24,600	47,585
1,193,829	36,531	10,050	36,720	1,555,073	47,585	24,600	48,088
1,200,000	36,720	11,540	37,199	1,571,507	48,088	24,833	48,716
1,200,000	36,720	11,540	37,199	1,592,017	48,716	25,455	48,960
1,200,001	36,720	10,807	36,720	1,600,001	48,960	26,441	49,168
1,215,652	37,199	12,179	38,100	1,606,792	49,168	26,760	49,793
1,245,100	38,100	12,210	38,522	1,627,221	49,793	26,877	50,400
1,258,893	38,522	12,210	38,564	1,647,056	50,400	27,377	50,837
1,260,270	38,564	12,449	38,703	1,661,326	50,837	28,471	51,436
1,264,803	38,703	12,751	39,086	1,680,913	51,436	29,327	51,982
1,277,328	39,086	13,655	39,704	1,698,752	51,982	30,112	52,020
1,297,529	39,704	14,030	39,780	1,700,000	52,020	30,716	52,320
1,300,000	39,780	14,987	39,930	1,709,798	52,320	31,213	52,973
1,731,147	52,973	31,863	53,518	2,352,624	71,990	65,168	72,948
1,748,940	53,518	32,825	54,087	2,383,923	72,948	66,743	73,441

(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767,535	54,087	32,968	54,796	2,400,039	73,441	68,022	73,978
1,790,707	54,796	33,477	55,080	2,417,576	73,978	69,022	74,881
1,800,001	55,080	34,387	55,147	2,447,081	74,881	70,513	75,834
1,802,178	55,147	35,343	55,746	2,478,235	75,834	71,834	76,490
1,821,781	55,746	36,034	56,367	2,499,688	76,490	73,165	76,509
1,842,071	56,367	36,986	57,002	2,500,290	76,509	74,056	77,180
1,862,823	57,002	37,779	57,734	2,522,207	77,180	75,614	78,149
1,886,726	57,734	38,505	58,140	2,553,879	78,149	76,822	79,107
1,900,002	58,140	39,561	58,220	2,585,211	79,107	78,030	79,774
1,902,620	58,220	40,345	58,854	2,606,981	79,774	79,129	80,756
1,923,346	58,854	41,076	59,590	2,639,099	80,756	80,407	81,698
1,947,396	59,590	42,124	60,333	2,669,862	81,698	81,836	82,550
1,971,655	60,333	42,866	61,029	2,697,718	82,550	83,055	83,116
1,994,396	61,029	43,944	61,200	2,716,214	83,116	84,284	84,135
1,999,989	61,200	44,713	61,200	2,749,516	84,135	85,651	85,191
2,000,000	61,200	45,645	61,221	2,784,017	85,191	86,967	85,882
2,000,693	61,221	46,643	61,802	2,806,602	85,882	88,388	86,847
2,019,689	61,802	47,526	62,599	2,838,143	86,847	89,147	87,915
2,045,717	62,599	48,567	63,330	2,873,033	87,915	89,343	88,759
2,069,614	63,330	49,624	64,044	2,900,635	88,759	90,642	89,571
2,092,938	64,044	50,618	64,379	2,927,143	89,571	92,044	90,711
2,103,896	64,379	51,692	65,150	2,964,427	90,711	93,488	91,697
2,129,076	65,150	52,797	65,945	2,996,642	91,697	94,969	91,841
2,155,057	65,945	53,935	66,712	3,001,336	91,841	96,455	92,757
2,180,123	66,712	55,001	67,310	3,031,287	92,757	98,051	93,887
2,199,681	67,310	56,120	67,539	3,068,212	93,887	99,483	94,981
2,207,167	67,539	57,337	68,354	3,103,957	94,981	101,035	96,146
2,233,801	68,354	58,623	69,115	3,142,034	96,146	102,553	97,367
2,258,674	69,115	59,938	70,038	3,181,913	97,367	104,084	98,270
2,288,809	70,038	61,080	70,438	3,211,448	98,270	105,723	99,426
2,301,893	70,438	62,509	71,140	3,249,208	99,426	107,314	100,677
2,324,830	71,140	63,978	71,990	3,290,108	100,677	108,928	101,699
3,323,500	101,699	110,567	102,963	5,242,846	160,431	180,119	163,084
3,364,792	102,963	112,283	104,130	5,329,543	163,084	182,810	165,762
3,402,937	104,130	113,972	105,337	5,417,066	165,762	185,403	168,468

(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442,389	105,337	115,666	106,673	5,505,493	168,468	188,200	171,272
3,486,048	106,673	117,399	107,451	5,597,130	171,272	191,001	174,203
3,511,480	107,451	119,175	108,835	5,692,894	174,203	193,901	177,135
3,556,686	108,835	120,947	110,177	5,788,727	177,135	196,992	180,122
3,600,566	110,177	122,696	111,556	5,886,355	180,122	200,115	183,218
3,645,624	111,556	124,561	112,929	5,987,503	183,218	203,446	186,406
3,690,504	112,929	126,353	114,231	6,091,695	186,406	206,834	189,872
3,733,038	114,231	128,221	115,615	6,204,973	189,872	210,385	193,438
3,778,263	115,615	130,141	117,052	6,321,502	193,438	214,178	197,177
3,825,227	117,052	131,949	118,602	6,443,699	197,177	218,155	200,907
3,875,884	118,602	133,807	119,960	6,565,584	200,907	222,300	204,885
3,920,272	119,960	135,682	121,620	6,695,593	204,885	226,743	209,322
3,974,513	121,620	137,459	122,753	6,840,587	209,322	231,505	214,233
4,011,539	122,753	139,451	124,348	7,001,088	214,233	236,585	219,758
4,063,675	124,348	141,317	126,004	7,181,620	219,758	242,063	226,065
4,117,791	126,004	143,219	127,753	7,387,751	226,065	247,971	232,910
4,174,927	127,753	145,220	129,385	7,611,422	232,910	254,377	240,800
4,228,263	129,385	147,166	131,267	7,869,288	240,800	261,485	248,972
4,289,785	131,267	149,083	133,141	8,136,350	248,972	269,299	258,317
4,351,027	133,141	151,167	135,080	8,441,723	258,317	278,115	269,208
4,414,388	135,080	153,035	137,073	8,797,633	269,208	288,090	281,298
4,479,523	137,073	155,188	138,870	9,192,736	281,298	299,471	295,815
4,538,226	138,870	157,172	140,943	9,667,165	295,815	312,864	312,298
4,605,969	140,943	159,298	143,052	10,205,825	312,298	329,212	337,035
4,674,913	143,052	161,510	145,018	11,014,226	337,035	349,667	364,337
4,739,150	145,018	163,570	147,189	11,906,429	364,337	368,636	390,656
4,810,113	147,189	165,953	149,419	12,766,535	390,656	384,842	431,402
4,882,974	149,419	168,053	151,539	14,098,118	431,402	405,835	498,529
4,952,239	151,539	170,481	153,278	16,291,790	498,529	434,777	639,411
5,009,100	153,278	172,750	155,373	20,895,782	639,411	482,342	1,416,806
5,077,538	155,373	175,170	157,887	46,300,843	1,416,806	874,036	-
5,159,701	157,887	177,655	160,431				

참고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1 세	2016	만 36세	1981년생	만 71세	1946년생
만 2 세	2015년생	만 37세	1980년생	만 72세	1945년생
만 3 세	2014년생	만 38세	1979년생	만 73세	1944년생
만 4 세	2013년생	만 39세	1978년생	만 74세	1943년생
만 5 세	2012년생	만 40세	1977년생	만 75세	1942년생
만 6 세	2011년생	만 41세	1976년생	만 76세	1941년생
만 7 세	2010년생	만 42세	1975년생	만 77세	1940년생
만 8 세	2009년생	만 43세	1974년생	만 78세	1939년생
만 9 세	2008년생	만 44세	1973년생	만 79세	1938년생
만 10세	2007년생	만 45세	1972년생	만 80세	1937년생
만 11세	2006년생	만 46세	1971년생	만 81세	1936년생
만 12세	2005년생	만 47세	1970년생	만 82세	1935년생
만 13세	2004년생	만 48세	1969년생	만 83세	1934년생
만 14세	2003년생	만 49세	1968년생	만 84세	1933년생
만 15세	2002년생	만 50세	1967년생	만 85세	1932년생
만 16세	2001년생	만 51세	1966년생	만 86세	1931년생
만 17세	2000년생	만 52세	1965년생	만 87세	1930년생
만 18세	1999년생	만 53세	1964년생	만 88세	1929년생
만 19세	1998년생	만 54세	1963년생	만 89세	1928년생
만 20세	1997년생	만 55세	1962년생	만 90세	1927년생
만 21세	1996년생	만 56세	1961년생	만 91세	1926년생
만 22세	1995년생	만 57세	1960년생	만 92세	1925년생
만 23세	1994년생	만 58세	1959년생	만 93세	1924년생
만 24세	1993년생	만 59세	1958년생	만 94세	1923년생
만 25세	1992년생	만 60세	1957년생	만 95세	1922년생
만 26세	1991년생	만 61세	1956년생	만 96세	1921년생
만 27세	1990년생	만 62세	1955년생	만 97세	1920년생
만 28세	1989년생	만 63세	1954년생	만 98세	1919년생
만 29세	1988년생	만 64세	1953년생	만 99세	1918년생
만 30세	1987년생	만 65세	1952년생	만 100세	1917년생
만 31세	1986년생	만 66세	1951년생	만 101세	1916년생
만 32세	1985년생	만 67세	1950년생	만 102세	1915년생
만 33세	1984년생	만 68세	1949년생	만 103세	1914년생
만 34세	1983년생	만 69세	1948년생	만 104세	1913년생
만 35세	1982년생	만 70세	1947년생	만 105세	1912년생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